붙임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687호)으로 가상광고 허용 프로그램 범위가 확대되고 크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으로 허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7조제3항)

나. 가상광고 크기 제한이 기존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다. 종전 부칙에서 정하고 있던 재검토 조항을 본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체계 정비(안 9조, 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란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다만,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가상광고의 크기 등) ① (생략)	제6조(가상광고의 크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상광고의 크기와 간접광고의 크기의 합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3분의 1----------.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7조(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스포츠 분야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때에	③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

는 제2조제4호 다목의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재검토기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